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1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보도의 정당한 범위**

공인의 공적 업무는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나,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한 보도라도 상당성(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을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해찬 씨가 총리 재직 당시 폭설피해 상황을 설명 받는 자리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피고 프린티어타임스는 당시 이 전 총리가 폭설현장을 방문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며, 이 전 총리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단순히 시민의 제보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자 관련 보도에 대해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시와 비판 기

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보도에 대한 범위는 넓게 인정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의 제보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반복한 점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보인다”며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론은 명예훼손적 보도를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가진 보도임(공공성)과 보도내용이 사실임(진실성)을 인정받거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상당성)가 있었음을 인정받으면 면책을 받게 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성을 부정했다.

**대법원(2부)**

**2008. 11. 13.자 판결(2008다53805)**

사 건 : 2008다5380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이 해 찬

피고, 상 고 인 : 주식회사 프린티어타임스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1870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11. 13.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2005. 12. 21.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폭설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예정하고 있었을 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

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회의 목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주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

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하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수인의 범위 및 그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08. 7. 2자 판결(2007나53805)

사 건 : 2007나6187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해 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5. 14.

판 결 선 고 : 2008. 7. 2.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 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1) 피고는 2005. 12. 27. 13:10경 피고 운영의 인터넷 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李 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별 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위 기사는 네이트, 드림위즈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까지 게재되었고 위 기사에 수백 개의 원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나. 기사 게재 이후 피고의 대응

그 후 피고는 원고 측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 위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00경에는 “프런티어타임스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 정읍의 폭설피해 현장 확인차 정읍 ㄹ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은 뒤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날 식탁에 오른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측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으며 저녁식사 자리에 놓여있는 병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 음료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다. 보도대상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1) 원고는 2005. 12. 21. 당시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는데, 당초 일정에는 16:20경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17:10경에는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18:40경에는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각 보고받고 19:30경 정읍시 소재 ○○식당(기사 속 ㄹ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2) 그러나, 당시 원고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 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이 악화되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 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 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정읍역을 출발하여 23:55경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3)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 측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 2.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 여부

피고는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

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한 행사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공직자에 대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 측에 의해서 그러한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고 하더라도 술병이 놓인 식사 장소에서 공격적인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피고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법원 제25민사부**  
**2007. 6. 13.자 판결(2006가합8882)**

사 건 : 2006가합8882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해 찬  
피 고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6. 13.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5. 12. 27. 13:10경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네이트, 드

림위즈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까지 게재되었고 위 기사에 수백 개의 비난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나. 기사게재 이후의 피고의 대응

그 후 피고는 원고 측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는 위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00경에는 “프런티어타임스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 정읍의 폭설피해현장 확인차 정읍 ㄹ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은 뒤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날 식탁에 오른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측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으며 저녁식사자리에 놓여있는 병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 음료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다. 보도대상사건 발생당시의 상황

한편, 원고는 2005. 12. 21. 당시 국무총리로서 호남 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는데, 당초 일정에는 16:20경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17:10경에는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18:40경에는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각 보고받고 19:30경 정읍시 소재 ○○식당(기사 속 ㄹ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원고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 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 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

와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정읍역을 출발하여 23:55경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측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가 놓여 있어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까지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

### 2.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여부

피고는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 주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보도대상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차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 <별 지>

사진설명 :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정읍의 ㄹ식당에서 폭설피해보고를 받고 있다. 식탁 위에서 양주병과 음료수 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기사내용 :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폭설피해현장 확인차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내의 ㄹ식당에서 시장, 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만을 받은 뒤 ‘양주파티’를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7시경 정읍에 도착했지만 폭설 피해현장 방문과 당초 예정돼 있던 정읍시청에서의 피해상황보고를 생략한 채 정읍시 수성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한 식당에서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

이와 관련,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며 “‘양주파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이 총리의 피해지역 방문을 학수고대하던 한 시민은 “눈이 산처럼 쌓여진 무너진 집과 축사들을 총리가 돌아보게 되면 제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간청하려고 했으나 식당에서 보고만 받고 돌아갔다”며 원망했다.

이날 이 총리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길에서 2시간 넘게 추위에 떨던 정읍시청의 한 관계자는 “1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받고 식사만 한 채 돌아갔다”며 아쉬워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의 ‘양주파티’와 관련, “이 총리가 지난해 10월 유럽순방 중에 폭탄주를 마시고 ‘조선, 동아일보에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날은 폭탄주를 마시지 않아 ‘폭탄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4월 5일 강원 양양군 산불이 낙산사를 덮치고 있는 중에도 골프를 치고, 7월 3일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 사례2 검찰 기소 내용에 근거한 범죄 보도의 한계

검찰의 기소 내용에 근거해 범죄사건을 보도하더라도 “검찰은 … 사실을 밝혀냈다” 등의 표현으로 단순 기소사실을 확인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 감사로 일했던 김○○ 씨는 해당 언론사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보험회사 전임직원이 보험유치 대가로 조성한 비자금 중 13억여 원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씨는 횡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담당판사는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 는 하나, “검찰은 …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인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며 상당성을 부정하고, 피고 언론사는 위자금 5백만 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에 원고가 상소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자 판결(2008가단15443)

사            건 : 2008가단15443 손해배상(기)

## 국내언론관계판결

원고, 피상고인 : 김 ○ ○

피고, 상 고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변 론 종 결 : 2008. 9. 30.

판 결 선 고 : 2008. 11. 4.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5%,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6. 18.자 사회면에 “퇴직보험 등 유치 대가 150억대 리베이트 오가”라는 제목 아래 원고에 관하여 “검찰은 구속된 한일생명 전 감사 김○○(49) 씨가 조성된 비자금 중 1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밝혀냈으며……”라는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검찰이 원고를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위 횡령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1심에서 2002. 12. 2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6. 3. 9.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횡령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확정사실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인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표현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도는 한일생명 전 임직원들이 보험유치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사 제목도 위 리베이트 관련 보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보도에 관한 것이 아닌 사실, ② 위 리베이트 관련 보도 역시 검찰의 기소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리베이트 관련 공소사실은 법원에서 모두 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저촉관련부당행위)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후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4.자 2007카기 6811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추후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보도내용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식자증이라면 결국 검찰의 기소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자금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금 5,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8.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